

#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

제정 2025. 5. 7.

## 제1장 총 칙

### 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에스피씨삼립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의 지속가능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# 제3조(권한)

- ①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,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- ② 위원회는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영역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사항을 발굴 및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 및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·검토한다.

## 제2장 구 성

### 제4조(구성 및 임기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- ④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 수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

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#### 제5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### 제 3 장 회 의

#### 제6조(회의의 종류 및 소집)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.
- ②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 단, 의결사항이 없을 경우는 소집하지 않는다.

#### 제7조(소집권자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 그러나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#### 제8조(소집절차)

- ①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여 그 24시간 전에 각 위원에 우편, 전자우편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#### 제9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위원회는 필요시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#### 제10조(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##### 1. 회사의 지속가능경영과 관련된 사항

- 1) 주요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정책
- 2)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주요 활동 보고
- 3)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계획

##### 2.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된 사항

- 1) 주주환원 정책(이사회 부의 전) 사전심의
- 2) 주주권익 관련 주요 사안 보고

##### 3. 기타 지속가능경영 및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위원회가 부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##### 4. 위원회 산하 분과, 연구회, 협의회 등 조직의 설치, 구성, 운영과 관련된 사항

##### 5.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

#### 제11조(관계인의 의견청취)

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속가능경영 업무를 관장하는 사내이사,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#### 제12조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## 제 4장 보 칙

#### 제13조(보고)

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간사)**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.

**제15조(규정의 개폐)**

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.

**부**          **칙**

이 규정은 202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